그래픽 리소스 외주 계약서

외주 금액: (선불금액)

(상업적 목적 전환에 의한 로얄티)

(총 지불 금액)

외주 기간:

갑: 팀 퍼스트하우스 조합 일동

을: 이종건

본 계약의 당사자인 팀 퍼스트하우스 조합원 일동 (이하 “갑”)와 이종건 (이하 “을”)는 “갑”이 개발중인 게임 Revolt Day (이하 “프로젝트”) 에 관한 그래픽 리소스 외주 계약(이하 “본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제1조(목적)**

1.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프로젝트”에 필요한 그래픽 리소스를 수주 및 상업적 용도로 전환함에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2. (개별계약) “개별계약”이란 “본 계약” 이외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추가 계약을 말하며, 개발

계약에서 합의된 이외의 사항은 “본 계약”에 따르고 “본 계약”과 개별 계약 간의 상이한 사항은

“개별계약”에 따른다.

**제2조(용어정리)**

1. “프로젝트” 란 “갑”이 기획하고 개발하여 상용화하는 게임을 말한다.

2. “효력 발생일” 이란 “갑”과 “을”이 본 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3. “지적 재산” 이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그래픽 리소스들, 서비스표시, 거래 및 사업명, 기밀정보 등 기타 유사 권리를 말한다.

4. “해당 그래픽들”은 “프로젝트”에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사용자 문서(Reference)를 말한다.

5. “프로젝트”에 총 그래픽에 포함되는 일러스트 28 ea, 실루엣 이미지5 ea, CG 10 ea의 분량을 의미한다.

6. “개발 내역” 이란 “갑”이 “을”에게 의뢰한 “프로젝트”와 관련된 그래픽 리소스 내역을 말한다.

7. “산출물” 이란 “갑”이 제시한 “개발 내역”에 대해 “을”이 수행한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 (공급 조건)**

1. “갑”은 “을”에게 그래픽 리소스의 제작비용으로 일시불 320,000원을

제4조 (계약금과 개발 일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2. “을”은 “갑”에게 원활한 그래픽 리소스 제작 결과를 위해 개발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월 일 까지로 한다.

3. “갑”의 추가적인 요청으로 인한 개발지연 시, 상호 협의하여 개발 완료일을 조정한다.

**제4조(계약금과 개발 일정)**

1. “갑”은 “을”에 대해 본 건 업무의 위탁료 로서 총 금액 320,000 원(VAT포함)을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1. 선 금: 계약 후 7일이내 일금 25 만원 (\ 250,000 ) (VAT포함)
2. 잔 금 : 납품 완료 후 차월 1일 2019.02.01 까지 일금 7 만원 (VAT포함)

에 해당하는 잔금을 지불한다.

**제5조(재위탁의 금지)**

**“**을”은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지 않고 본 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해서는 안 된다.

**제6조(일반 사항)**

1. “갑”은 “을”에게 본 외주 수행에 필요한 개발 관련 “해당 자료” 협조 및 제공을 하여야 한다.

2. “갑”은 계약 이행과 관련 세부 일정 등을 정함에 있어 “을”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3. “을”은 “본 계약” 조건과 “개발 내역”을 반영하여 외주 계약을 이행한다.

4. “갑”과 “을”은 계약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변경이나 외주 수행상 필요한 경미한 추가

외주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가급적 외주 범위 내에서 수행토록 협력한다.

**제7조(제작 절차)**

“갑”이 의뢰한 “그래픽 리소스(일러스트 28 ea, 실루엣 이미지5 ea, CG 10 ea)” 작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한다.

1. 자료의 제공

“갑”은 “프로젝트”에 사용 될 “해당 자료”를 “을”에게 제공하고, “갑”의 승인에 따라 “을”은

제작에 착수 한다. 제작 기간의 착수 시점은 “갑”이 승인한 날로부터 한다.

[해당 자료 목록]

1. 각 항목 리스트
2. 각 항목 리스트에 대한 그래픽 리소스
3. 그 외 “을”이 필요로 할 경우 : 참고 레퍼런스 자료

2. 인도 및 검사

“을”은 제작된 “개발 내역”에 대한 “산출물”을 “갑”이 지정한 저장 공간에 저장 후 통보한다.

“갑”은 인수일로부터 1주 이내에 검수하여 그 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때 검수

방법은 다음의 제 9조에 의거 시행한다.

3. 제작 완료 확인

“을”이 인도한 “산출물”이 이상 없음을 “갑”이 확인하였을 때에 “그래픽리소스” 제작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8조(검수 방법 및 하자 보수)**

1. “을”이 “그래픽 리소스”를 제작 완료하였을 때에는 이를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은 “그래픽 리소스”의 “산출물”에 대하여 검수를 실시한다. 검수 후 “갑”이 서면에

의해 검수 완료를 통지한 때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추후 추가적으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을”은 이를 보완할 책임을 진다.)

3. “을”은 최종 검수를 완료한날로부터 12개월간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 발생에 대하여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9조 (권리와 의무 및 양도)**

1. “을”은 “그래픽 리소스”의 제작과 유지 보수에 최선을 다한다.

2 “갑”과 “을”은 상호간의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이 중간 결과 보고를 요청할 경우 통신 상으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중간 결과물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을”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권리 또는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 시킬 수 없다.

다만, “갑”의 서면 승낙이나 사전 동의를 받은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을”은 최종 “산출물” 또는 “갑”의 중간 검수를 마친 외주 “산출물”을 제 3자에게 매각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목적 등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0 조 (지적재산의 소유권)**

1. “본 계약”에 의해 개발된 모든 그래픽 리소스 등 모든 개발 결과물 및 이에 대한 권리는 법에 따라 등록되었든 되지 않았든 해당된 “프로젝트” 내에서 사용된 그래픽 리소스는 “갑”의 소유이며,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을”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지분을 주장하지 않는다.

2. ”본 계약”에서 별도로 언급이 없는 한, “을”은 개발된 모든 사항을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어떠한 목적으로도 자료를 복사, 복제, 수정, 번역, 파생작품 제작, 발췌할 수 없다.

**제 11 조(자료의 보관․관리)**

“을”은 본 건 업무에 관해서 “갑”으로부터 제공된 서류, 정보, 데이터 기타 모든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보관, 관리하고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지 않고

제하거나 반출 혹은 본 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2조(비밀유지)**

①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관해 갑에 대해서 얻은 사실을 본 계약의 이행 중은 물론이고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개시 혹은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관여하는 “을”의 종업원 그 밖의 자에 대해서도 앞 항의 의무를 준수 시켜야 한다.

**제 13 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갑” 은 다음 각호의 경우 제작 완료시까지 외주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고, “을”이

이를 불이행하거나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갑”이 판단한 경우 “갑”은 “을”에게 “본 계약” 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다.

1. “갑”의 시정 요구를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2. “을”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갔다고 판단한 경우

③ “을”이 파산 선고를 받거나 해산, 청산, 회사 정리 절차에 들어갔을 때

2. “갑”의 협정 위반에 대한 “을”의 시정 요구를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을”은 “갑”에게 “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3. 위 1.2항의 해지 효력은 “갑” 또는 “을”이 서면으로 해지 통보를 발송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4. “갑”에 의한 계약 해지의 경우, “갑”은 총 계약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을”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5. “을”에 의한 계약 해지의 경우, “을”은 총 계약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갑”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 14 조 (계약의 해석 및 분쟁관할)**

1.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내용 및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그 내용의 수정 및 첨삭을 결정한다.

2. “본 계약”과 관련하거나 혹은 쌍방의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쌍방은 상호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견이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없을 경우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15 조 (신의 성실 및 협조)**

본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은 신의와 성실로써 “본 계약”을 수행해야 하며,

“갑”과 “을”은 “본 계약”에 의한 계약 기간 및 제작 기간 동안 원활한 제작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한다.

**제 17 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갑”과 “을” 이 쌍방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제 18 조 (계약서 보관)**

“본 계약”을 상호 자유로운 의지로 완전 합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월 일**

**갑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나비빌딩 836호**

**상 호 : 팀 퍼스트 하우스**

**대표자 : 제갈우진 (인)**

**을   주 소 :**

**대표자 : 이종건 (인)**